

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996. 7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6년 7월 3일

○ 회부일자 : 1996년 7월 3일

3. 제 안 이 유

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4. 주 요 골 자

○ 위원회의 구성

- 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하되 교육감소속 공무원중 10인의 당연직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5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교육감이,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됨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.

○ 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함

-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
-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

○ 회 의

-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.
-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.

○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도록 함.

○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관계기관,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○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○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
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

지방재정법 (법률 제4868호 '95. 1. 5) 제6조 및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안 제4조 4호 "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" 에 대하여는 제5조(회의)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임.